

정책보험지급팀

○ 담 당 자 : 차장 황상천

○ 전화번호 : 02-3786-7884

○ 일 자: 2021. 3. 23

수신: 수신자 참조

발신: 정책보험지급팀

제목 : 농기계종합보험 「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 시」지침 안내

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으므로 향후 업무처리시 착오가 없도록 실무자들에게 전파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사건번호

□ 대법원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(대법원 공보연구관실 02-3480-1451)

2. 변경내용

□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일부를 **공단이 부담함**

→ 공제 후 과실상계

□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

종전	변경
전체치료비 × 가해자책임비율	(전체치료비-공단부담금) ×
- 공단부담금	가해자 책임비율
<과실상계 후 공제방식>	<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>

□ 공단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소송에서 구상금액 산정

종전	변경
전체치료비 × 가해자책임비율과 공단부담금 중 적은 금액	공단부담금 × 가해자책임비율

※ 전체치료비 : 공단부담금 + 본인부담금

3. 농기계보험 실무적용

- □ 기 자손·대인 매뉴얼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방법 삭제하고 본 지침에 의거 처리함
- 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
- 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할 경우 <u>공단부담금에서 피해자의</u> <u>과실비율을 공제하고 지급함</u>
- □ 청구영수증과 함께 청구권이 들어올 경우 공단지사 담당자에게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고 과실상계 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단추가지급 보고서를 한장으로 제출요망

붙임: 대법원 판례 판결문 1부. 끝.

수신자: 탑, 대영, 태평양, 국제, 태양, 해성, 보람, 이앤에스, 고려, 코마, KM, 리카온, 다스카, 프라임, 한국, 세계, 에스에이에스, 티엔지, 서진, 아세아, 서울, 세종, 에스원, 솔로몬, 드림, 현대하이카

정 책 보 험 지 급 팀 장(직인생략)